

4.5.5 학생단체및학생활동규정

제정 2000. 04. 21

제정 2016. 09.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칙 제39조에 의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학구능력과 교시에 입각한 학생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단체 및 학생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동아리 및 기타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목적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1. 종교 및 봉사
2. 학술연구 및 예술활동
3. 체육 및 친교
4. 기타 학생회 임무 수행

제3조(설립요건) 학생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활동목적이 학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함
2.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3. 단체 설립에 찬성하는 50명 이상의 학생회원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함
4. 지도교수의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함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4조(등록) 학생단체를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신청서 1부
2. 단체원 명부 1부
3. 회칙 1부
4. 연간 활동계획서 1부
5.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6. 계속된 활동으로 갱신 등록할 경우는 제1호의 서류 외에 전년도 활동보고서

제5조(기간) ① 구비서류의 제출기간은 매 학년초 지정된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단체의 존속은 당해 연도에 한 한다.

제6조(단체인정) 등록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장이 공고한 때 부터 학생단체로 인정된다.

제7조(학교시설 이용) ① 학교시설이용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교여건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활용이 부진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단체대표자) ① 단체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전체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 이상인 재학생이어야 한다.

- ② 단체 대표자로서의 임기 중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즉시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지도교수) ①학생이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학 내 모든 단체의 집단활동과 운영은 당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2>

- ② 학생회에 소속된 학생기구의 지도교수는 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타 단체의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거나 학과(부)장으로 하며, 모든 집단활동 시 책임을 진다. <신설 2016.09.22>
- ③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활동과 운영을 책임 지도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신설 2016.09.22>

제10조(임원개선 및 해산명령)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 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단체활동이 제2조에 위배될 때
2. 단체활동이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단체활동이 부진한 때
4. 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미승인 단체활동)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가 아니면 일체의 조직과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집회 및 집단활동 허가)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복지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2>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외부인사나 단체초청에 의한 집회
 3. 대학 내 모든 집단활동
-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서는 학생복지처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집회는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호의 집회허가 신청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학생복지처장은 허가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9.22>
 - ⑤ 제1항 제3호의 집단활동 허가 신청에는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확보 매뉴얼에 맞춰 행사(집회)신청을 한다. <신설 2016.09.22>

제13조(게시물)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게시물 등을 첨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게시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모조1/2절지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크기를 바꿀 수 있다.

제14조(간행물) ① 발행 :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발행해야 하며 발간물에는 지도교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검인 :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배포할 수 없다.

③ 통제 :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간행물의 발행 승인의 취소 및 간행물 제작의 중지
2. 간행물의 배포 승인의 취소 및 배포된 간행물의 회수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